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7. . . (제 회)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90호, 2017.3.14공포, 2017.9.15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1)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함

(3)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규정

나. 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1) 발명교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2) 교육감은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 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다. 특허청장 소속 발명교육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1)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명교육심의위원회의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2)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을 규정

라. 특허청장 소속 지역발명교육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1) 발명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지역발명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2)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함

마. 교육부 장관에 대한 협조요청(안 제9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바. ‘발명교육센터’ 관련 위임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명칭, 목적, 위치 등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2)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3) 발명교육센터에는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고, 매월 일정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4)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사.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제15조)

- (1)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 신청절차, 심의 등 지정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규정
- (2)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 또는 부정으로 지정받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 (3) 발명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취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고용노동부
8. 여성가족부장관
9. 병무청
10. 중소기업청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초·중·고, 대학, 기업별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2.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지식재산 교과 등 발명교육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교원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자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업재직자의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허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발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지역발명교육협의회) ① 발명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등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지역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별 발명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하고, 위원은 시·도 교육청 소속의 발명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9조(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요청)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중앙행정기관(특허청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2. 발명교육센터의 설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5. 그 밖의 행정 지원

제12조(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 받은 학교의 장은 그 발명교육을 받은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14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신청 직전 3년 이상의 발명교육과 관련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1조에 따른 발명교육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및 발명교육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서
2. 신청 직전 3년간의 발명교육과 관련한 실적을 적은 서류
3.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된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주소지, 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된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정 취소된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생발명 활동의 촉진 업무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교육 및 연구 활동 등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설치·운영 업무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 인력 양성 지원
7.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8.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2018년도 시행계획은 2018년 3월 1일까지 각각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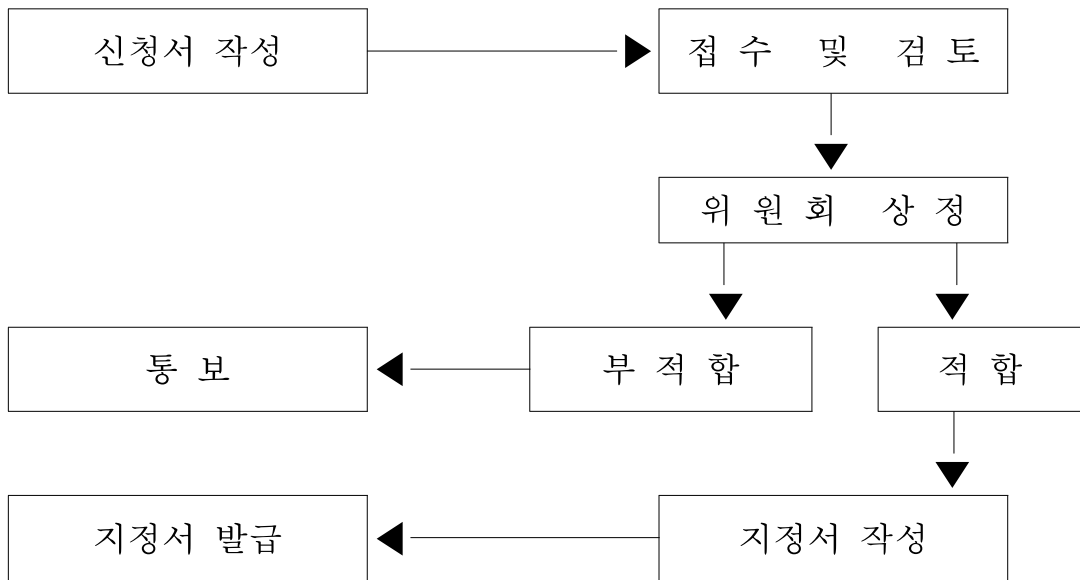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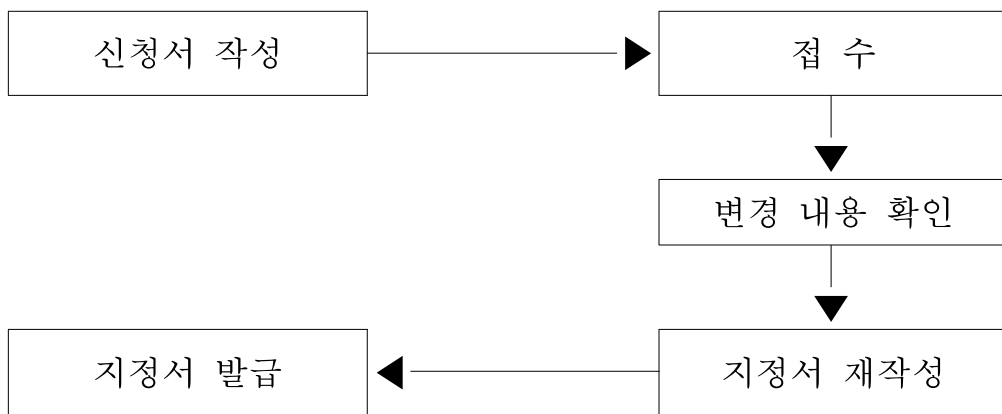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1. 지정신청



2. 변경신청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

지정번호 : 제 호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

1. 기관(단체)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대 표 자 :
4. 주 소 지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 허 청 장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연 락 처	(042) 481 - 8241